

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최도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7. 26.

발의자 : 최도자 · 이찬열 · 정동영  
유동수 · 강훈식 · 주승용  
김종회 · 송석준 · 윤소하  
권은희 · 오제세 · 박선숙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합동발표('16.11) 「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」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.

따라서 판매장에서 화장비누(고체 형태의 비누)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「화장품법」(법률 제15488호, 2018.3.13. 공포 및 2020.3.14. 시행)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함.

그런데 화장비누(고체 형태의 비누)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및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

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 개정).

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”를 “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6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(생략)          ② 누구든지(<u>맞춤형화장품조제</u> 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<u>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</u> 제외한          다)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         아니 된다.</p>	<p>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6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-----          -----<u>맞</u>  <u>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판매업자-----</u>          -----.</p>